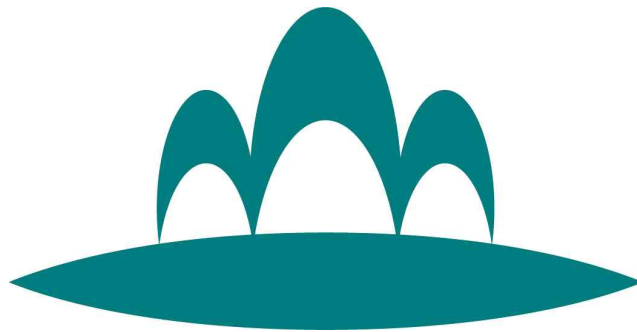


- 일시 : 2023. 12. 22 (금) 10 : 00
- 장소 :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2층

12월 통장자유회 정례회의

동정홍보자료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미추홀구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미추홀구 감사실(☎880-458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추홀구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무 팀 -

1.	2024년 미추홀구 새해 해맞이 행사	3
2.	내 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4
3.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5
4.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제 운영 안내	7

홍보사항

1. 2024년 미추홀구 새해 해맞이 행사 안내



2024년 미추홀구
새해 해맞이 행사

미추홀구 甲辰年에도 잘해보자!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일시
2024. 1. 1.(월) 07:00~08:10 ※07:48(일출예정)

장소
수봉공원 현충탑 앞 광장

참석대상
미추홀구 공직자 100명 내외, 구의원,
구 단체장협의회, 기타 참여희망 주민

주요내용
(1부) 시산제, 새해소망 적기
(2부) 신년인사, 대북공연, 풍물공연, 기념촬영

※문의: 미추홀구 총무과(☎880-4110)

2.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시기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작업 시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눈이 그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 내 집 앞 눈쓸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시기

-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 시설물의 지붕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주요기관 연락처

대설·한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 205-1542-3**

2 국민행동요령, 임시 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 205-5237,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 2181-0502, <http://www.kma.go.kr>
-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032) 440-3358



“대설·한파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http://www.incheon.go.kr>

대설 행동요령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들을 준비합니다.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저웁니다.



스노체인, 얼혀갈습 등 자동차 활동용품들을 준비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고립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평상시 대설대비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난사재, 교통 혼잡, 생인사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대설이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대설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취하도록 합니다.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활동 장비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한파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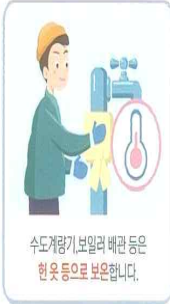
노약자, 영유아 등 유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



외출 시에는 등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



등상에 걸리면 비까지 맞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을 갑니다.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한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활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을 합니다.

평상시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한파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인부를 살펴봅니다.

한파 관련 정보

한파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어 한파특보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수해보험

태풍이 와도 자진이 나도 걱정마세요.

풍수해보험이 지켜 드립니다!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이에요!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자연재해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상	지진해일			

가입 대상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상가, 공장, 주택, 온실

※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시행

운영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SAMSUNG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meritz 메리츠화재	1688-7711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4.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제 운영 안내

- 기 간: 2023. 12. 8. ~ 2024. 2. 29.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의 ‘집중신고 바로가기’ 및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 활용
- 집중신고 분야: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산불
- 인센티브 제공(분기별 안전신고 우수사례 선정시)
- 문 의: 미추홀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032-880-4832)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大雪 **한파** **화재** **산불**

2023. 12. 8. ~ 2024. 2. 29.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Play 스토어 ▶ App Store 에서 다운 받아 신고하세요.

- 맞춤형 복지팀 -

1.	긴급지원 사업 안내 홍보	9
2.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안내 [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10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11
5.	2023년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 안내	11
6.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개소 안내	11
7.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안내	12
8.	아이사랑꿈터 이용 안내	12
9.	아동학대신고 안내	13
10.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안내	13

홍보사항

1. 긴급지원 사업 안내 홍보

□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경매, 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24,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행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긴급지원종류

-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입원 및 수술비), 연료비, 주거비 지원 등

□ 접수처: 송의4동 사회복지 담당 (☎ 032-728-6150)

2.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안내 (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 선정제외: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 032-728-6150)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대 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 1958년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유사중복사업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제공 서비스: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이동지원, 가사지원 등)
- 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 문 의: 송의4동 노인복지 담당 (☎ 032-728-6153)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 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 1958년생)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인 어르신
- 지 급 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5,200원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 부부)에 따라 최대 515,200원까지 차등 지급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협조사항: 1958년 12월, 1959년 1월 생일 도래자에게 홍보
- 문 의: 송의4동 노인복지 담당 (☎ 032-728-6153)

5. 2023년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 안내

- 기 간: 연중 운영
※ 동절기 집중 운영기간: 23.12.1.(금) ~ 24.2.29.(목) / 3개월
- 대 상: 상시적 복지 위기가구, 독거가구, 장애인가구, 계절형 실업·한파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단전·단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이 있는 1인가구)
- 내 용
 - 예 방: 복지멤버십 가입독려, 방문 건강 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 발 굴
 - 빅데이터(행복e음)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 민·관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한 발굴
 - 지 원
 -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기초생활수급, 디딤돌 안정소득,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
 -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6.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개소 안내

- 임시거처 주택 현황 : 용현동 4개소
- 입주대상 : 퇴거위기가구, 재난위기가구, 주거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 전세사기 피해자 제외)
-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 입주조건 : 보증금, 임차료 없음, 공과금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 1일 ~ 3개월 (1회 연장, 최대 6개월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 지원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주거급여 수급 자가가구, 공공매입임대주택 거주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2년 미경과 가구
- 지원기준: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
- 지원내용: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단독·긴급 맞춤 지원
- 신청기간: 23.12.1.(금) ~ 24.2.8.(목)
- 문 의: 송의4동 주거복지 담당 (☎ 032-728-6153)

8. 아이사랑꿈터 이용 안내

- 대 상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 (만 0~5세)
-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 (휴관: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 운영시간 : 10:00~18:00 (주 40시간 이상, 점심시간 12:00~13:00)
 - 이용시간 : 2시간 (1타임 10:00~12:00, 2타임 13:30~15:30, 3타임 16:00~18:00)
- 이용료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2시간(1타임) / 가정당 1,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 :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교재비 별도
- 미추홀구 6개소

구분	소재지	연락처
1호점(도화2.3동)	숙골로112번길 12, 403동 지하 1층	032-872-1255
2호점(학익1동)	노적산로 43, 두산위브 101동 1층	032-874-8180
3호점(학익2동)	재님이길9번길 6, 206호	032-872-3179
4호점(도화1동)	수봉북로12번길 8, 도화해드림 1차 가동 지하 1층	032-874-4579
5호점(문학동)	소성로294번길 13-41	032-441-4077
6호점(주안5동)	경인로471번길 60	032-437-0508

9. 아동학대신고 안내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 : 국번 없이 112 또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동학대 신고요령
 - 언 제 : 학대받는 아동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한 경우
 -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부모가 외출할 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된 경우
 -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거짓인 경우
 -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아동
 - 신체 부위 상처(화상, 멍, 골절 등)가 자주 발견되는 아동
 - 누 가 : 아동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 무엇을 : 신고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 판단에 도움 됨
 - 어떻게 : 국번 없이 112 신고
- 문 의 :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 032-728-6150)

10.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안내

- 목 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자립생활 지원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염창로 46, 602호 (주안동)	886-4880	
자립생활 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안동	886-4880	여성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안동	886-4880	남성
자립주택	신장 장애인 자립주택	주안동	863-8806	신장 장애인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비용지원현황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 생계비
사업 목적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	탈시설을 희망하나 생계비 부담을 우려하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입주한 자는 체험홈 퇴소 시, 자립주택으로 입주한 자는 자립주택 퇴소 시 지급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내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95% 이하 *재산기준: 1억 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1인당 800만원(1회) 지원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월 488,800원 자립 정착 생계비 지원

□ 문의: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032-728-6148)